

#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 11. 3  
[ 조례 제1116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증평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